

의안번호	제 675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4. 1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21. 1. 1.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되고 기존 업무추진부서인 학교자치과의 ‘성별영향평가’ 관련 업무가 체육건강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수정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변경

(현행)당연직위원 “학교자치과장”을

(변경)당연직위원 “체육건강안전과장”으로 변경함(제4조제3항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관계부서협의: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2. 5. ~ 2021. 2. 25.):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학교자치과장”을 “체육건강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학교자치과장”을 “유아특수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정책기획과장, <u>학 교자치과장</u>, 행정과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체 육건강안전과장</u>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성별영향평가법

[시행 2018. 9. 28.] [대통령령 제29095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[조례](#)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